성범죄 피해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

기존의 성범죄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흉악•잔혹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근절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나, 성범죄 관련 법령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갖추는 등 근본적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서는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성범죄의 범위와 처벌,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피해자 보호•지원책 및 성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성범죄 피해자 1
1. 성폭력 피해자 4
1.1.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 4
1.1.1. 성폭력의 범위 4
1.1.2. 성폭력의 처벌 등 8
1.2.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14
1.2.1. 신고 14
1.2.2. 상담 14
1.2.3. 고소 및 공소시효 16
1.2.4. 손해배상 18
1.3.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20
1.3.1. 피해자보호시설 20
1.3.2.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23
1.3.3.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25
1.3.4. 신원 및 사생활 보호 26
1.4.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28
1.4.1. 의료지원 28
1.4.2. 취업지원 29
1.4.3. 주거지원 30
1.4.4. 법률지원 및 긴급지원 31
1.5.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35
1.5.1. 성폭력 예방교육 35
1.5.2.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36
1.5.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1
1.5.4. 성충동 약물치료 46
2. 성매매 피해자 51
2.1. 성매매의 범위 및 처벌 51
2.1.1. 성매매의 범위 51
2.1.2. 성매매의 처벌 53
2.2. 성매매 발생 시 대처방법 58
2.2.1. 신고 58
2.2.2. 상담 59
2.2.3. 고소 60
2.2.4. 손해배상 60
2.3.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61
2.3.1.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61
2.3.2.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63
2.3.3. 신원 및 사생활 보호 64
2.4.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 65
2.4.1. 피해자지원시설 65
2.4.2. 의료지원 68
2.4.3. 취업지원 69
2.4.4. 주거지원 72
2.4.5. 법률지원 73
2.4.6. 신용회복지원 75
2.5. 성매매 예방 및 재범방지 76
2.5.1. 성매매 예방교육 76

1. 성폭력 피해자

1.1.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

1.1.1. 성폭력의 범위

"성폭력"의 개념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불법촬영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제외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다룹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성희롱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상의 성폭력

구분		내용
성풍속에 관한 죄	음행매개죄 (「형법」 제242조)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
	음화반포 등의 죄 (「형법」 제243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
	음화제조 등의 죄 (「형법」 제244조)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등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형법」 제301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형법」 제301조의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형법」 제305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강도강간죄 (「형법」 제339조)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구분	내용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특수절도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2.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죄와 그 미수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죄와 그 미수 4.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죄와 그 미수 5. 1.~3.의 상습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및 제15조)	1.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함)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편집등"이라 함)한 죄와 그 미수 2. 위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편집물등"이라 함)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위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죄와 그 미수 3.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4. 위 1과 2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죄와 그 미수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및 제15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이에 대한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죄와 그 미수 위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죄와 그 미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은 이 콘텐츠의 <성매매 피해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A.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사람'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혼인생활에서 부부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여 가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한 아내에 대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 남편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형법」은 법률상의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법률 제11574호(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된 것을 말함)].

※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는 **성인**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2. 성폭력의 처벌 등

「형법」 등의 처벌규정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구분		내용
성풍속에 관한 죄	음행매개죄 (「형법」 제24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반포 등의 죄 (「형법」 제243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제조 등의 죄 (「형법」 제24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상해·치상죄 (「형법」 제30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죄 (「형법」 제301조의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 제302조)	5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10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형법」 제305조)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
강도강간죄 (「형법」 제339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구분	내용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1.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4.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1.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4.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6.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7.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1.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4.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6.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1.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1.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3)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2. 1.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자 또는 1.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의 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4. 1. 또는 2.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 1.~3.의 상습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6. 몰수 및 추징: 위 1.~5.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5조의3)	1.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함)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편집등"이라 함)한 죄와 그 미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2. 위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편집물등"이라 함)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위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죄와 그 미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3.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4. 위 1과 2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죄와 그 미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5. 상습죄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6. 몰수 및 추징: 위 1.~5.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3)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이에 대한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위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상습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4. 몰수 및 추징: 위 1.~3.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

형벌 외에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 본문).

※ “보호관찰(保護觀察)”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성폭력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함)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倂科)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5항 본문).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의 내용으로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7항).

√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폭력 범죄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성폭력 범죄자가 가석방된 경우

▪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假釋放)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8항 본문).

※ "가석방(假釋放)"이란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조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법원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3항).

> ※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2호).

> ※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 사람에 대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2호).

※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성충동 약물치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1.2.1. 신고

성폭력 피해 사실의 신고

성폭력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구분	신고전화	인터넷 신고
경찰청	☎ 112	사이버경찰청
검찰청	☎ 1301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 + 1366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피해상담소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연락처	
해바라기센터	전국 해바라기센터 연락처	

미성년자 보호시설 책임자 등의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의무

성폭력 피해 신고의무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함)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의 범죄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강간 등 상해·치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형법」 제301조)
- 강간 등 살인·치사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형법」 제301조의2)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제1항)

※ 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1.2.2. 상담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통한 상담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호).

※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연락처는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s://www.mogef.go.kr)-유형별서비스-시설찾기>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외에도 다음의 지원을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 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성범죄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의 보호-피해자보호시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445면).

※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의 연락처는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s://www.mogef.go.kr)-유형별서비스-시설찾기>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

1. 상황 인식하기

1) 나의 건강상태

: 피해로 입은 외상이나 내상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식사나 수면의 변화는 없는지, 피해로 인해 발생한 나의 감정은 어떠한지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2) 피해가 나에게 미친 사회적 영향

: 피해를 겪은 뒤 회사나 학교에 가지 못할 수도 있고, 학습 부진이나 대인관계 기피 등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생활비나 생활 공간을 제공하던 사람과 떨어져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된 소문이나 가해자의 거짓말 때문에 주변의 좋지 않은 시선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때문에 새로 생긴 어려움인지, 원래 겪던 어려움이 심화된 것인지 살펴봅시다.

3) 사건의 정황 정리하기

: 사건 후 피해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기억이 퇴색하거나 왜곡되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가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 피해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자세히 기록해봅시다. 가해자가 한 말이나 행동, 인상착의나 신체적 특징 등도 기록해두세요. 이때 기록해둔 자료는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하거나 해결을 시도할 때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혼자 기록하는 게 힘들다면 상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볼 수도 있습니다.

2. 원하는 해결에 집중하기

: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하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방향을 잃지 않고 더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치료, 상담 및 법적 지원 등 원하는 해결 방식 여러 가지가 동시에 떠오를 수 있는데, 구체적이고 상세하면 더욱 좋습니다.

3. 해결 방법의 장점과 어려움 검토

: 해결 방법에는 크게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사법 제도, 정부 기관, 학교 및 회사 등 소속 공간의 제도나 관련 기구를 이용하는 제도적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먼저 다양한 해결법을 떠올려 나열해봅시다.

4. 주변 지지체계 검토 및 자신의 강점 파악

: 신뢰할 만한 주변 사람이나 전문 기관, 단체를 통틀어 '주변 지지 체계'라고 한다면, 지지 체계는 성폭력 해결 과정에서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이 사건 해결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사건 해결의 중심에 선 것은 어디까지 피해자 자신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검토할 사람을 찾도록 합시다.

5. 사건 해결의 목표와 한계 결정하기

: 해결의 방향을 잡았다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봅시다. 가해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목표도 가능하고, 나 자신을 위한 조치가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나중에 달성됐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목표만큼이나 한계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적인 한계와 같은 외부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다거나 일상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는 상황 등의 내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 설정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성폭력이란-성폭력의 대응>

1.2.3. 고소 및 공소시효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고소

고소권자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함)

▪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의 방식

▪ 위의 고소권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적용배제

과학적 증거(DNA)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 다음의 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2항).

구분	내용
「형법」 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강도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공소시효 적용배제

▪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4항).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1.2.4. 손해배상

민·형사상 배상

배상명령

▪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성폭력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구분	내용
「형법」 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위의 죄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간 등의 예비·음모죄(「형법」 제305조의3) 강도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폭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및 제15조)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및 제1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성폭력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배상신청

▹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전단).

▹ 배상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 배상명령의 효력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 소송비용

▹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손해배상

▪ 손해배상청구

▹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항).

▹ 미성년자가 성폭력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제3항).

▪ 수인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1항).

▹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2항).

▹ 교사(敎唆)자나 방조(幇助)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제3항).

1.3.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1.3.1. 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한 보호

보호시설의 종류 및 보호기간

▪ 성폭력 피해자는 다음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구분	보호대상	보호기간
일반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1년 이내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	2년 이내
특별지원 보호시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	19세가 될 때까지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	1년 이내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및 외국인 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	2년 이내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	2년 이내

▪ 다음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항).

구분	연장사유	연장기간
일반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1차례 ※ 다만,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가 될 때까지 해당 보호시설의 장이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입소기간 연장 의사 및 보호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1년 단위로 연장
장애인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1회당 2년 이내)
특별지원 보호시설	보호시설의 장이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입소기간 연장 의사 및 보호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25세가 될 때까지(매년 1년 단위로 연장)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1차례(입소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1차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폭력 피해자가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이수중인 경우	2년의 범위에서 1차례 ※ 다만,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가 될 때까지 해당 보호시설의 장이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입소기간 연장 의사 및 보호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1년 단위로 연장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폭력 피해자가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이수중인 경우	2년의 범위에서 1차례 ※ 다만,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가 될 때까지 해당 보호시설의 장이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입소기간 연장 의사 및 보호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1년 단위로 연장

보호시설의 업무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의 업무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분	업무
일반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의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피해자 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다른 법률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보호시설의 입소

▪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은 다음의 경우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성폭력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후단).

보호시설의 퇴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의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그 밖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1.3.2.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검찰총장은 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말함)을 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동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 성폭력 사건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여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및 제1항).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

▪ 검사 및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3항).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 성폭력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1항).

진술조력인의 참여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 다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단서).

국선변호사 선정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5항).

▪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제2항).

-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 범죄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죄로 한정함)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1.3.3.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심리의 비공개

▪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

▪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2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및 제15조)
-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및 제15조)
-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

▪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3항).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 강도강간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와 그 미수,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진술조력인의 참여

▪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영상물의 증거활용

▪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제1항).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은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2. 19세미만피해자등이 사망, 외국거주,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

증거보전 청구

▪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 전단).

-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 후단).

1.3.4.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 공소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1호).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4호).

Q.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했는데 수사를 담당했던 직원이 제 사진을 유출하여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수사, 공소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

만약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1호).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공소청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공소청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 그 신변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1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1조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 공개금지

▪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2호).

정보 삭제 등 요청

▪ 성폭력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전단).

▪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정보게재자”라 함)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후단).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의 제공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 제공

▪ 성폭력 피해자는 국가기관에 요청하면 서면, 구두,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다음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형사절차	제공되는 정보
수사단계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공판단계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형집행단계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보호관찰 집행단계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1.4.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1.4.1. 의료지원

전담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지원

전담의료기관

▪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진료지원

▪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성폭력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다음의 의료지원을 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보건 상담 및 지도
- 치료
-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 임신 여부의 검사
-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및 복통 등의 치료
-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의료비 지원

▪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성폭력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과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 시·군·구, 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285).

※ 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 명세서, 상담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전담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는 상담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285).

※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이란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명의로 발행한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사본, 성폭력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스마일센터 이용사실 확인서 또는 군 피해자의 경우 군에서 제출하는 성폭력 신고 확인서를 말합니다(「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285).

치료·회복프로그램

▪ 일정한 성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314).

▹ 성폭력 피해자는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및 문화체험 등 성폭력 피해자별로 개별화·전문화된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314).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3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2. 취업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고용주의 불이익조치 금지

▪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 고용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취업지원

취업알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

▹ 위의 취업 지원 대상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

1.4.3. 주거지원

주거공간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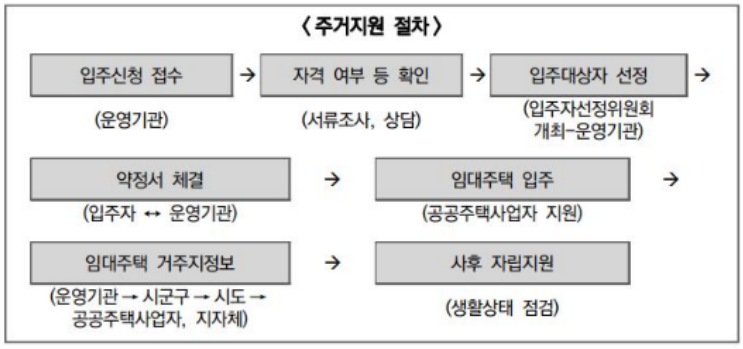
공동생활가정 입주

▪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다음의 경우에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및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105 ~ 118).

▹ 입주자 선정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여성”으로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함

구분	내용
임대기간	-2년(1차에 한정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함) -다만, 공실 현황 및 입주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로 2년 연장 가능(최대 6년 입주)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여성”으로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함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사람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사람 ° 그 밖에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임대보증금 면제(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만원 이내 1회 납부하고 퇴거 시 반납함) °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절차



※ 성폭력 피해자의 공동생활가정 입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2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은 다음의 경우에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2. 우선공급 나.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0),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172 ~ 176].

구분	내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일반 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대상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가해자 제외)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지원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친족, 아동·청소년)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6개월(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1년) 이상 입소한 피해자[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여 퇴소하게 된 사람은 제외하고,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하고,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 피해자의 국민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3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4. 법률지원 및 긴급지원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지원

무료법률지원

▪ 성평등가족부장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및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및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99 ~ 104).

구분	내용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지원범위	°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선금)하되, 본안사건은 150만원, 재정 및 항고신청, 그 밖에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은 40만원 기준임 °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지급한 경우 소송 종료 후 사업수행기관으로 보전청구하되, 변호사가 지급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수임료 청구 시 일괄 청구 °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기관별 내부 지침에 따라 1인 추가 시마다 40만원 이내 추가 지급 가능 ° 통·번역비 및 수화통역비 등 포함
지원내용	° 민사·가사 소송대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함 ° 형사소송 지원: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과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및 고소대리 등을 지원함 ° 법률상담: 면접, 전화, 사이버, 출장 및 서신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함 ° 법률계몽사업
지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 지부 및 41개 출장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민사소송·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조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인 경우

√ 성폭력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대리 등의 지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3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5항).

법률상담

▪ 성평등가족부장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1)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및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99).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3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5항).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및 법률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2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선임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범죄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자,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함) 및 그 법정대리인 등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제1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등

▪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함)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

▪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

▹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피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및 제6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참조).

√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 범죄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죄로 한정함)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하려는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범죄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은 범죄행위자에 대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까지(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하 “경찰”이라 함)에게 선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3항).

▪ 국선변호사 선정 결정

▹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있거나 선정 의무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전단).

▹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를 범죄피해자마다 1명씩 선정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

▪ 국선변호사 선정 통지

▹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복지시설·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각 기관의 요청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에 그 사실을 서면,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 전단 및 제5항).

▪ 국선변호사 선정 변경

▹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경찰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 등

▪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

▹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국선변호사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한 경우 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업무중지 기간 개시 전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재판장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검사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복지시설·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각 기관의 요청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에 그 사실을 서면,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3항).

▪ 국선변호사 재선정

▹ 검사는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이 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 재기(再起)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7호 본문).

※ 다만, 형사조정, 전문가의 감정 등 피의자·참고인 등의 소재불명 외의 사유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나더라도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이 종료되지 않습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7호 단서).

▹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긴급지원

가구 내 성폭력에 대한 긴급지원

▪ 성폭력 피해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제9조제1항, 제10조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p. 3~4).

구분	내용
지원대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으나 성폭력 가해자가 생계유지를 책임지고 있어 신고 등을 꺼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및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약제비 포함) ▶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교육지원: 가구원 내 초·중·고학생의 학용품비 등 ▶ 그 밖의 지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및 전기요금 등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지원

※ 가구 내 성폭력에 대한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긴급복지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1.5.1.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폭력 예방교육

▪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관·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항제1호).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유치원의 장
- 어린이집의 원장
- 각급 학교의 장
- 학교의 장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제외함)

▪ 위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위의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등을 통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참조).

▪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전단).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성폭력 추방 주간

▪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1.5.2.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확인

신상정보 등록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다음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본문).

구분	내용
「형법」 상의 성폭력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 강도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 •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폭력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5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제외)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제외)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및 제15조) •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및 제15조)

▪ 신상정보 제출의무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1항 본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함)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등록되는 신상정보

▹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제1항 본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함)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사진

√ 출입국 사항(체류국가·체류기간 및 입국 사실 등)

√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제1항).

▪ 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되며, 법무부장관은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지난 때
2.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 때

신상정보 공개

▪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 법원은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판결로 위에 등록된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제2조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함),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3. 1. 또는 2.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공개되는 등록정보

▹ 공개명령을 통해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함)는 다음과 같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함)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 등록정보 공개기간

▹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고,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구분	기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 다만, 다음의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1.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봅니다.
2. 1.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1.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1.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1.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 공개명령 집행

▹ 공개명령은 정보통신망<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를 이용하여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Q. 우리 동네에 성폭력 범죄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제공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초기화면에서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I-PIN, 디지털원패스 중에 택일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하시면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사건(이하 “특정중대범죄사건”이라 함)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함)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피고인이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신상정보 고지

▪ 등록정보 고지대상자

▹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함),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 및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의 장,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함)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항).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제2조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함),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3. 1. 또는 2.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고지되는 고지정보

▹ 고지명령을 통해 고지하도록 제공되는 고지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및 제50조제4항).

구분	고지정보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 상세주소를 포함함)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	• 위의 고지정보 • 고지대상자의 전출 정보

▪ 고지명령 이행기간

▹ 고지명령은 다음의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구분	기간
집행유예 선고 시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시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 고지명령 집행

▹ 고지명령은 고지정보를 우편송부, 정보통신망<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송부하고, 읍·면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함)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1.5.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대상

▪ 다음의 범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조).

구분	내용
「형법」 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 해상강도죄와 그 미수(사람을 강간한 죄에 한정함. 「형법」 제340조제3항 및 제342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말하며,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휴대용 추적장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함)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재택(在宅) 감독장치: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부착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징역형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 검사는 다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함)을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6항).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 및 제2조제1호).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

▪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성폭력범죄 판결과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5항).

구분	기간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10년 이상 3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위의 범죄는 제외함)	3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 (위의 모든 범죄는 제외함)	1년 이상 10년 이하
※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위 각 기간의 하한의 2배로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다음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 주거지역의 제한
-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500시간의 범위일 것)
-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3항).

▪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함)·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함)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다음의 방법으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 휴대용 추적장치는 피부착명령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교부합니다. 다만, 부착장치에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습니다.
- 부착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부착합니다(발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음).
- 재택 감독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석방 후 지체 없이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에 고정하여 설치합니다(피부착명령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전자장치를 분리·회수하여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며,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집행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제8항).

정지사유	잔여기간 집행시기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 다음의 경우에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집행이 종료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가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 연장

▪ 피부착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가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출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않은 경우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 피부착명령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행형(行刑) 성적 등 자료에 의해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위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가석방 및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 등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집행

▪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부착해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24조제2항제1호).

▹ “가석방(假釋放)”이란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을 정지하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가석방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을 불허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다음의 경우에 전자장치의 부착집행이 종료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호 및 제3호).

▹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거나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가종료 등 시 전자장치 부착집행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함)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는 날(피치료감호자에게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의 잔여 형기가 있거나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인하여 집행할 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제2호).

▪ 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을 정지하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가석방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을 불허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가종료자 등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경우에 전자장치의 부착집행이 종료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호).

집행유예 시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명령

▪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집행유예(執行猶豫)”란 범죄자에 대해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 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부착명령의 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명령 집행을 정지하며,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원이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기각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 다음의 경우에 부착명령 집행이 종료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 **※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의무**
>
> ·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함)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 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27조 및 제31조).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인 피고인이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닌 행위"를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한 판례

대법원은 "그 효용을 해한다"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해석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인 피고인이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닌 행위"에 대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5862 판결).

· 피부착자는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제27조, 제31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다만, 외국인,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기함)
   가. 외국인: 국적·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나.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다. 외국국적동포: 국적·여권번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가. 내국인: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
   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 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4. 연락처
5. 사진
6. 죄명 및 판결·결정 내용
7. 전자장치 부착기간(부착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8. 직업
9. 그 밖에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27조 및 제31조).

· 피부착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성폭력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4. 성충동 약물치료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

▶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 사람에 대해 다음의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2호).

구분	내용
「형법」 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강도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 해상강도죄와 그 미수(사람을 강간한 죄에 한함.「형법」 제340조제3항 및 제342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성도착증 환자”란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함)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

약물치료명령 청구

▪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3항).

▪ 법원은 성폭력범죄사건의 심리결과 약물치료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약물치료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약물치료명령 판결

▪ 법원은 약물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성폭력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로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4항).

▪ 약물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약물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약물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약물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함)·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약물치료명령 집행

▪ 약물치료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약물치료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다음의 경우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며, 잔여기간에 대해 다음에 따라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정지사유	잔여기간 집행시기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된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 다음의 경우에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이 종료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 약물치료기간이 지난 때
- 약물치료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 약물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약물치료기간을 지난 때

약물치료기간 연장

▪ 약물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약물치료기간(종전의 약물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함)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약물치료

약물치료명령 청구

▪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약물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수형자(이하 “성폭력 수형자”라 함)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함)에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약물치료명령 판결

▪ 약물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약물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약물치료명령 집행

▪ 약물치료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약물치료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 다음의 경우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며, 잔여기간에 대해 다음에 따라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14조제4항, 제5항).

정지사유	잔여기간 집행시기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된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 다음의 경우에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이 종료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20조).

- 약물치료기간이 지난 때
- 약물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약물치료기간을 지난 때

약물치료기간 연장

▪ 약물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약물치료기간(종전의

약물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함)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가종료자 등에 대한 약물치료

약물치료명령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약물치료명령 집행

▪ 약물치료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 보호관찰관은 가종료자 등이 가종료·치료위탁 또는 가출소 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가종료자의 경우 집행할 잔여 형기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어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 다음의 경우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며, 잔여기간에 대해 다음에 따라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 제5항).

정지사유	잔여기간 집행시기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 다음의 경우에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이 종료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 약물치료기간이 지난 때
- 가출소·가종료·치료위탁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 약물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약물치료기간을 지난 때

2. 성매매 피해자

2.1. 성매매의 범위 및 처벌

2.1.1. 성매매의 범위

성매매의 개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지칭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근거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는 수요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근거법령에 상관없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통일하여 지칭합니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자의 정의와 범위는 근거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관련 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제2항)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2. 1.과 같은 목적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3. 1.과 2.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1.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4.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형법」 상 성매매 관련 행위

- 「형법」 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와 그 미수(「형법」 제288조제1항, 제2항,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죄와 그 미수(「형법」 제289조제2항, 제3항,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형법」 제290조,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형법」 제291조,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와 그 미수(「형법」 제292조,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죄

※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는 성인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2. 성매매의 처벌

성매매 처벌 규정

성매매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	처벌
1. 성매매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2. 영업으로 4. ~ 6.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3. 영업으로 4. ~ 6.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4.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 5.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 6.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 8.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 9.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10.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 11.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 12.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2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13.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 14.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 15.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 16.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3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17. 13. ~ 16.의 죄(미수범을 포함함)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 18.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 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13 ~ 16.의 죄를 범한 사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23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
20.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3조) 21.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 및 제23조) 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17. 또는 18.의 죄를 범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23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
23.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3조)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20. ~ 21.의 죄를 범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2호 및 제23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

- 「형법」에 따른 성매매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구분	내용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와 그 미수(「형법」 제288조제1항, 제2항,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와 그 미수: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죄와 그 미수(「형법」 제289조제2항, 제3항,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죄와 그 미수: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형법」 제290조,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형법」 제291조,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와 그 미수(「형법」 제292조,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죄: 7년 이하의 징역

수익 몰수 및 추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호처분 등

보호처분의 결정 및 기간

▪ 판사는 성매매 관련 사건의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구분	보호기간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6개월까지
보호관찰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사회봉사·수강명령	100시간까지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보호관찰(保護觀察)"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위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보호처분의 변경

▪ 법원은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청구하면 결정으로 한 번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4조제3항).

구분	보호기간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1년까지
보호관찰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사회봉사·수강명령	200시간까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 특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

▪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는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및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포함)

나. 위의 가.와 같은 목적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 및 나.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다.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Q.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구매한 사람만 처벌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Q.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은 모두 성매매 피해자인가요?

A.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는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2.2. 성매매 발생 시 대처방법

2.2.1. 신고

성매매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성매매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구분	신고전화	인터넷 신고
경찰청	☎ 112	사이버경찰청
검찰청	☎ 1301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 + 1366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피해상담소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해바라기센터	전국 해바라기센터 연락처	

성매매 관련 시설종사자 등의 신고의무

신고의무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신고자 보호

▪ 누구든지 성매매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매매 등을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성매매 등을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2.2.2. 상담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을 통한 상담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호 참조).

> ※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연락처는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s://www.mogef.go.kr)-유형별서비스-시설찾기>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성매매 등 피해에 대해 상담 외에도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현장 방문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 성매매 피해자 등의 구조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매매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매매 등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의 보호-피해자보호시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통해 성매매 등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여성긴급전화 1366

▪ 성매매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성매매 등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445면).

※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의 연락처는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s://www.mogef.go.kr)-유형별서비스-시설찾기>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3. 고소

성매매 가해자에 대한 고소

고소권자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성매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성매매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성매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성매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매매 등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의 방식

▪ 위의 고소권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형법」에 따른 성매매 등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2.2.4. 손해배상

민·형사상 배상

배상명령

▪ “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 배상신청

▹ 검사 및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 외국인여성인 성매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전단).

√ 외국인여성이 배상신청을 한 경우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검사 및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 배상신청을 할 때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 배상명령의 효력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외국인여성인 성매매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 소송비용

▸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손해배상

▪ 손해배상청구

▸ 성매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 성매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매매 등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 성매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매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매매 등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매매 등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항).

▸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제3항).

▪ 여러 명이 성매매를 한 경우의 가해자 책임

▸ 여러 명이 공동으로 성매매 등을 저질러 성매매 피해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1항).

▸ 공동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명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2항).

▸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제3항).

2.3.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2.3.1.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검찰총장은 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하여금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에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매매 등에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말함)을 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동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 성매매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검사 및 수사기관은 신고자등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미성년자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 성매매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

진술조력인의 참여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 다만, 성매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단서).

국선변호인 지정

▪ 성매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매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5항).

▪ 성매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 외국인여성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출입국관리법」 제46조) 또는 보호의 집행(「출입국관리법」 제51조)을 해서는 안 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단).

-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한 때(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 등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이 없었던 경우(재수사요청이 있었으나 그 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송치요구가 없었던 경우를 포함)로서 해당 기간 만료일까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없었던 경우로 한정)
-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때

▪ 이 경우 검사 및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

▪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에는 해당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2.3.2.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성매매 관련 범죄, 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매매 등에 대해 재판을 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심리의 비공개

▪ 성매매 등에 대한 심리는 그 성매매 피해자 및 성매매를 신고(고소·고발 포함)한 사람 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

▪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매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2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법원은 성매매 등을 신고(고소·고발 포함)한 사람 또는 성매매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미성년자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

영상물의 증거활용

▪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함)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1항).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은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2. 19세미만피해자등이 사망, 외국거주,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

증거보전 청구

▪ 성매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성매매 등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 전단).

-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 후단).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 검사는 외국인여성의 성매매피해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 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를 일시해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에는 해당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2.3.3.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매매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매매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의 수사, 공소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매매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매매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

- 성매매 등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성매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1호).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4호).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호).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 검사는 성매매 피해자가 공소청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매매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해 보복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매매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1조제1항·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의 조치

-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 공개금지

▪ 누구든지 성매매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매매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성매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 성매매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2호).

정보 삭제 등 요청

▪ 성매매 피해자는 인터넷에 정보가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정보게재자"라 함)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의 제공

피의자 신상 공개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함)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 제공

▪ 성매매 피해자는 국가기관에 요청하면 서면, 구두, 모사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가해자에 대한 다음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형사절차	제공되는 정보
수사단계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공판단계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형집행단계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보호관찰 집행단계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 "가석방(假釋放)"이란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성매매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2.4.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

2.4.1. 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지원시설의 종류 및 입소기간

▪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 피해자 등"이라 함)은 다음의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함)을 통해 다음의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구분	보호대상	보호기간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	1년의 범위
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자 등	19세가 될 때까지
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등	3개월의 범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	2년의 범위

▪ 다음에 따라 지원시설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구분	연장사유
일반 지원시설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 지원시설	2년의 범위에서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의 범위에서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장애인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당 2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지원시설의 업무

▪ 지원시설은 다음의 업무를 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구분	업무
일반 지원시설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4.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함) 9.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청소년 지원시설	1. ~ 9. 업무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
외국인 지원시설	1. ~ 5. 및 9.의 업무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숙박지원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그 밖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활동의 지원

지원시설의 입소

▪ 지원시설에 입소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지원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구분	제출서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소동의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시설 입소(이용)요청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및 상담기록카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원시설로 인계 요청을 받은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지원시설로의 인계요청서

▹ 지원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과 그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을 지켜야 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지원시설의 퇴소

▪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이나 이용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하거나 이용을 중단시켜야 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

-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 퇴소 또는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1., 2. 및 4.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내부 규정에 따른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2.4.2. 의료지원

전담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지원

전담의료기관

▪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 피해자 등”이라 함)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진료지원

▪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이나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건 상담 및 지도
- 성매매 피해의 치료
-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의 치료

의료비 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음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성병감염 여부의 진찰·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보호비용
-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및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등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 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을 포함함)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 의료지원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각종 질병 등 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1인당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항목별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 지원기간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731 및 p. 734).

구분	내용
지원대상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및 상담소 이용자 * 자활지원센터 이용자는 상담소 및 지원시설 연계를 통해 지원
지원내용	- 위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중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의료비용 - 의료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의료지원 동행비, 교통비, 식비 및 입원 시 필요한 생활용품, 통·번역비 등)
집행방법	- 의료지원 시 치료보호 대상자가 성매매 피해자라는 사실을 지원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 입증·확인하고 의료기관에 치료 의뢰 - 의료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진료내역, 의료비영수증 및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 - 해바라기센터에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청구 시 진료명세, 의료비 영수증 수령 후 지출

▪ 성매매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 강의 및 정서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736).

>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및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의 각각의 사업을 통해 의료를 지원받는 경우 다른 사업을 통해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731).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현장 접근성을 높인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집결지 정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의료지원을 합니다(「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761 및 p. 770).

구분	내용
지원대상	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업소 생활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질환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
지원내용	- 종합건강검진비용(1인당 60만원 이내)

> ※ 성매매 피해자의 의료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8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3. 취업지원

지원시설을 통한 취업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 직업훈련지원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취업·창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1명당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항목별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 지원기간은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732, p. 735).

구분	내용
지원대상	지원시설(일반, 청소년 및 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이용자(상담소 제외)
지원내용	취업·창업 등의 준비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 수강료(재료비 포함) 및 직업훈련수당(월 20만원 이내-1명당 지원한도액 1000만원 안에 포함) - 직업훈련 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교통비, 식비 및 통·번역비 등)
지원대상	- 국공립·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검정고시 교육기관 등 외부 훈련기관에 수강하는 사람으로서 훈련수강률 80% 이상인 사람 - (직업훈련 시작 첫 달) 훈련수당 월 기준액 바로 지급 / (직업훈련 다음 달부터) 전월 훈련 출석률 대비 80% 이상인 경우에만 매월 훈련수당 지급
지원절차	- 직업훈련 지원대장, 자격증 취득현황, 검정고시 교육 및 응시결과 등 기록함 - 사업수행자가 교육기관에 카드결제(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 가능, 현금지급 불가)하고, 교육기관이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을 첨부함 - 훈련수당은 수강생 본인 계좌에 입금 - 학원 등록 후 교육과정 변경이나 수강포기 시 수강료 여입조치 -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및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 각각의 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731).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은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현장 접근성을 높인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집결지 정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761, p. 770).

구분	내용
지원대상	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 자활프로그램 참여도 등을 통해 자활의지가 검증된 사람으로서 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외부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사람
지원내용	취업, 창업, 진학준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훈련 종목에 대해 지원
직업훈련 수당지급 조건	- (직업훈련 첫 달) 훈련수당 바로 지급 → (2회차) 전월 출석률 대비 20% 이상인 경우 지급 → (3회차) 전월 출석률 대비 50% 이상인 경우 지급→ (4회차) 전월 출석률 대비 80% 이상인 경우 지급 - 수당은 수강생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선지급은 안 되고,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후 지급)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 자활지원센터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720).

구분	내용
지원대상	- 탈성매매 여성으로 자활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중 법률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
지원내용	-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 - 자활참여자지원사업: 공동작업장 및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 - 전업 및 사회통합 지원 - 직업훈련 및 진학 및 기술교육(외부 위탁교육 포함) 실시 -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 등의 운영 지원 - 그 외 이용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가 승인한 사업 운영

▪ 자활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자활참여자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721).

구분	공동작업장	인턴십 프로그램(전국)
지원금액	- 1명당 월 1백만원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 한해 3명까지 추가 지원 가능(자녀 1명당 월 10만원)	공동작업장과 동일
지원조건	- 월 150시간까지 참여 가능 - 참여지원금은 시간당 해당연도 최저시급(26년 기준 10,320원) 기준 지원 - 공동작업장 참여자가 작업장 운영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작업장 총 참여시간의 20% 범위에서 참여시간으로 인정	- 월 150시간까지 참여 가능 - 참여지원금은 시간당 해당연도 최저시급(26년 기준 10,320원) 기준 지원 -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는 월 150시간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이상 경우 지원 기관과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업체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지원기간	1년 원칙	1년 원칙
지원인원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별 최소 10~30명 이내로 운영가능(인턴십 프로그램 인원 포함)	

※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8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노동부에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791).

구분	내용
지원대상	15~69세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지원시설에 입소해 있는 성매매피해자(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및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및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2. 소득지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신청방법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신청서 접수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의 취업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8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4. 주거지원

주거공간의 제공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공동생활시설 운영

▪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다음의 경우에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및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711, p. 718).

구분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입소기간	1년 원칙(1년 6개월 연장 가능)	19세가 될 때까지(2년 연장 가능)	2년(2년 연장 가능)
입소대상	성인 성매매피해자 등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	탈성매매 여성으로서 자활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람
지원업무	1. 숙식제공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 포함)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 일반 지원시설과 동일 2.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 수행	1. 숙박 지원 2.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3.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지원 4. 자립·자활을 위한 활동의 지원 5. 사회보장급부(생계, 의료급여) 수령지원

※ 성매매 피해자의 공동생활시설 입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8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거문제는 연계시설에서의 자활과정을 거치고 자립단계에 들어선 사람에 대해서는 자립지원 공동생활 및 공공주택 입주 등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762).

2.4.5. 법률지원

법률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 법률지원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선불금 등 법률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경우 1명당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항목별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 지원기간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731, p. 734).

구분	내용
지원대상	지원시설(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및 상담소 이용자
지원내용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그 밖에 법적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및 증거수집 등을 위한 필요비용(조사동행비, 교통비, 숙식비 및 녹음비 등 간접비용), 외국인 피해자 통·번역비, 귀국지원 비용
집행방법	° 법률지원대장 및 개별 법률지원 기록카드 작성 °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구조지원사업자가 법률사무소에 카드결제(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 가능, 현금지급 불가)하고 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 첨부 ° 증거수집비용 등은 업무수행자가 관련 경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 청구한 경우에 한해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별 카드와 함께 보존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및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의 각각의 사업을 통하여 법률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731).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법률문제해결 등을 지원하는 경우 1인당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항목별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 지원기간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732, p. 770).

구분	내용
지원대상	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그 밖에 법적·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사람
지원내용	변호사 선임료 및 증거수집비 등

법률상담

▪ 성평등가족부장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 장, 성매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1)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및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99, p.100).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3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5항).

※ 성매매 피해자의 법률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8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6. 신용회복지원

채권무효조치

성매매 등으로 인한 채권무효

▪ 다음의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포함)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 Q. 저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했으나 이젠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자 업주가 감금하고 계속 성매매를 시켰으며 선불금을 갚기 전까진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액수가 너무 커서 갚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A. 성매매 여성에게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후 그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그만두려고 하는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다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 따라서 그 여성은 성매매 피해자로서 그 업주에게 성매매 등으로 인해 생긴 채권은 무효이므로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지원

▪ 탈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790).

▪ 지원대상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 지원내용

▹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상환유예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연기)하고 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
분할상환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을 분할상환
이자면제	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만을 전액 상환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및 향후 발생할 이자는 모두 면제
※ 신용회복지원 신청비용 5만원은 각 지원시설의 법률지원비(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금)로 지원되지만, 개인사채 또는 일부 대부업체 채무는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에 내방하여 신청서류를 접수합니다.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후 약 2개월 내에 확정됩니다.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상환독촉이 중단되고 확정 시 연체정보는 모두 해제됩니다.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될 때 신용회복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2시간의 신용관리 교육을 수강합니다.

※ 성매매 피해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8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 및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5. 성매매 예방 및 재범방지

2.5.1.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성매매 예방교육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다음의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학교

▹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기관·단체는 제외함)

▪ 위의 교육 대상이 아닌 국민은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다음의 교육기관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다음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성매매 예방교육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강의, 시청각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 및 업무

▪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간 종합 연계망 구축
- 성매매 피해자 구조체계 구축·운영 및 성매매 피해자 구조활동의 지원
- 법률·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의료 지원체계 확립
-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상담소 등 종사자의 교육 및 상담원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성매매 방지활동 및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매매 추방주간

▪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를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